

#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및 유의사항]

-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건본주택(<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이버 건본주택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은 건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당사가 사전 안내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기간 :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부적격의심사항 소명을 위한 방문일, 공급계약서 체결기간 등 당사가 사전 안내한 기간
    - 건본주택 방문 방법 :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홈페이지(<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경우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인원 : 당첨자(대리인 포함) 및 동반자 1인(자녀도 1인으로 산정) 총 2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77-5117)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의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도로 신설 예정으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서측·북측으로 근린공원(근린공원16)이 접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신례리제2저수지(직선거리 약 0.6km)가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물류창고(직선거리 약 0.6km)가 위치하여, 시설물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직선거리 약 4.0km)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골프장(직선거리 약 0.9km)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의 동탄JC 남동측에 폐기물처리시설(크린에너지센터\_음식물유폐기물처리시설, 직선거리 약 3.6km)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신주거문화타운)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당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 레벨차이로 단지 내·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통신 인입을 위한 맨홀 및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단지 내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차량 진출입,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의한 눈부심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및 어린이집)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신설 예정인 (가칭)동탄23초(직선거리 약 30m)에,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가칭)동탄23초의 학교설립 시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는 개교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개교 전까지 (가칭)동탄22초(직선거리 약 0.7km, 2023년 3월 개교 예정)에 임시배치할 계획입니다. 당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통학거리증가를 보완하고자 입주자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통학안전대책(통학버스 제공 등)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임시배치 해지일까지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외에도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4.(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24.(수))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2019.11.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06.23.)」 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전혼자녀 등)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 12. 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기능이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 / 1·2순위)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신고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자가 직접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 시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분양권 전매, 거주유무기간,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0년	10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12.17.)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유무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정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주택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21. 12. 08.(수)	2021. 12. 09.(목)	2021. 12. 10.(금)	2021. 12. 17.(금)	2021. 12. 19.(일)~22.(수)	2021. 12. 28.(화)~31.(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내방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당사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 - 50153호(2021.11.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60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4층~지상20층, 총 4개 동, 총 308세대

[특별공급 38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계		
민영 주택	2021000835	01	101.9777A	101A	101.9777	28.1563	130.1340	76.5974	206.7314	92.0667	155	15	4	19	136	8
		02	101.9722B	101B	101.9722	27.7566	129.7288	76.5933	206.3221	92.0617	153	15	4	19	134	8
	합 계										308	30	8	38	270	16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 상(청약 시) 주택형	101.9777A	101.9722B
약식 표기	101A	101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함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총·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2022.01.28.	2022.04.11.	2022.08.10.	2022.12.12.	2023.05.10.	2023.08.10.	2023.12.11.			
101.9777A	155	4111동 1, 4호 4112동 1, 4호 4113동 1, 4호 4114동 1, 4호	1층	8	213,670,000	272,300,000	27,230,000	513,20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102,640,000	
			2층	8	220,770,000	281,300,000	28,130,000	530,20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106,040,000
			3층	8	225,370,000	287,300,000	28,730,000	541,40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108,280,000
			4층	8	230,070,000	293,300,000	29,330,000	552,70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110,540,000
			5~20층	123	234,770,000	299,300,000	29,930,000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12,800,000
101.9722B	153	4111동 2, 3호 4112동 2, 3호 4113동 2, 3호 4114동 2, 3호	1층	6	212,600,000	271,000,000	27,100,000	510,70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51,070,000	102,140,000	
			2층	8	219,700,000	280,000,000	28,000,000	527,70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105,540,000
			3층	8	224,410,000	285,900,000	28,590,000	538,90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107,780,000
			4층	8	229,110,000	291,900,000	29,190,000	550,20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110,040,000
			5~20층	123	233,810,000	297,900,000	29,790,000	561,50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112,300,000

3.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에 따른 공급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101A	101B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8	8	1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7	7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세대수의 3% 범위)		4	4	8
합 계		19	19	3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로만 구성되어, 특별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되는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은 배정세대가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41 1129 2128 1385">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li> </ul>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li> <li>•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 마감 이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li> <li>•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신청 당시 청약신청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서 청약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ul>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 대상자(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단,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_「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	-	-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 대상자(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III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 세대주일 것
  -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11.24.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20%)와 경쟁하며, 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와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거주자(50%)와 경쟁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이므로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주택의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2순위 :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신청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자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4) 청약신청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 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li>• 1순위자로서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ul> </li> <li>■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li> <li>■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60세 이상 포함)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1. 12. 08.(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
일반공급	1순위	2021. 12. 09.(목)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1. 12. 10.(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한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6:00)**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 마감 시간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V 당첨자 발표 및 입주자 선정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1. 12. 17.(금)</li> <li>•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12. 17.(금) ~ 2021. 12. 26.(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을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12. 1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자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주택형별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li> <li>•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 85㎡ 초과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정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투기과열지구)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추첨제 우선공급]</b></p> <p>▣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p>※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대규모주택개발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11.24.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li> <li>*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ul>

구 분	선 정 방 법
<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li> <li>•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li> <li>•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멸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VI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일정은 별도 안내(홈페이지, 개별연락 등)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는 별도 안내 예정	2021. 12. 19.(일) ~ 2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방법 : 예약 방문 접수(제출 방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li> <li>• 제출 장소 : 당사 건본주택(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li> <li>※ 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홈페이지 안내 예정</li> </ul>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검증서류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 건본주택으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어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여부,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별도 안내 예정)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자격검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방문예약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확인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 참여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청약 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전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서류[※ 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일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 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정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기타 가정 확인 서류	-	가정 산정에 필요한 서류(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중 가정제 당첨자 서류 참고)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건본주택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거주기간 산정,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정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거주기간 산정,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ul>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 12. 28.(화) ~ 12. 31.(금)	•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건본주택(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3-585978	한국자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4112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41120101홍길동' / 4112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411210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적격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재제출한 경우 제외)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본인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대리 계약 시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본인 발급 당첨자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 및 제출을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신고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청약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사정 등에 의해 대출이 불가한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조달하여 기일 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형의 경우 정부정책 규제로 중도금대출 불가)의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납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당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를 비롯한 사업관계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선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알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앞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가 앞선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본 아파트 공급대금 중 중도금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잔금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잔금납부 시 은행권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본인 잔금대출취급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VIII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공사

#### 1.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기일
101A	9,460,000	946,000	8,514,000
101B	9,050,000	905,000	8,145,000

- 발코니 확장 시 상세내역은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의 확장형 평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새시는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형태, 재질, 사양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다른 공간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상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3-586044	한국자산신탁(주)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112동 101호 계약자 → ‘41120101홍길동’ / 4112동 1001호 계약자 → ‘411210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청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제거 등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건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색상은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시공으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와 비확장 세대의 바닥 단차구간이 다를 수 있으며 배수구 및 드레인, 수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구조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여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우물천정(거실 및 주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 품목(시스템에어컨, 인덕션(하이브리드), 광파오븐, 렌지후드(더블스퀘어))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1. 시스템에어컨(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 (안)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삼성 무풍에어컨 (일반형)	선택1(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101A, 101B	4,730,000	473,000	4,257,000
	선택2(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101A, 101B	7,400,000	740,000	6,660,000
	선택3(6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101A, 101B	8,600,000	860,000	7,740,000
삼성 무풍에어컨 (공기청정형)	선택1(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101A, 101B	5,400,000	540,000	4,860,000
	선택2(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101A, 101B	8,500,000	850,000	7,650,000
	선택3(6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101A, 101B	9,900,000	990,000	8,910,000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도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배관(거실+침실1(안방))은 설치하지 않습니다.(시스템에어컨 금액은 설치되지 않는 기본제공 냉매배관(2개소)의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에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선택품목

◎ 101A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현관	현관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101A	1,300,000	130,000	1,170,000	
	공기청정시스템		101A	770,000	77,000	693,000	
	클린존(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101A	5,000,000	500,000	4,500,000	
	현관중문	3연동 도어		101A	1,300,000	130,000	1,170,000
		스윙도어		101A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아트월(거실)		101A	900,000	90,000	810,000	
	복도아트월1(침실2, 3)		101A	450,000	45,000	405,000	
	복도아트월2(주방)		101A	660,000	66,000	594,000	
	폴리싱타일(거실+주방바닥)		101A	4,950,000	495,000	4,455,000	
침실	침실2 불박이장		101A	1,000,000	100,000	900,000	
	알파룸	시스템가구	101A	4,400,000	440,000	3,960,000	
	드레스룸 (침실1(안방))	파우더장	101A	1,300,000	130,000	1,17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101A	1,200,000	120,000	1,080,000	
		시스템가구	101A	3,300,000	330,000	2,970,000	
주방	주방고급장식장		101A	1,200,000	120,000	1,080,000	
	아일랜드식탁(상판 엔지니어드스톤+하부장 포함)		101A	2,000,000	200,000	1,800,000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상판)		101A	3,600,000	360,000	3,240,000	
	보조주방+선반		101A	500,000	50,000	450,000	
	인덕션(하이브리드)		101A	450,000	45,000	405,000	
	광파오븐		101A	450,000	45,000	405,000	
	렌지후드(더블스퀘어)		101A	900,000	90,000	810,000	
	냉장고장 (비김치냉장고, 비냉장고 선택 시 기본 제공)		101A	1,000,000	100,000	900,000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구조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여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우물천정(거실 및 주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 품목(시스템에어컨, 인덕션(하이브리드), 광파오븐, 렌지후드(더블스퀘어))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현관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101B	1,300,000	130,000	1,170,000
	공기청정시스템		101B	770,000	77,000	693,000
	클린존(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101B	3,300,000	330,000	2,970,000
	현관중문	스윙도어	101B	1,400,000	140,000	1,260,000
거실	거실아트월(거실)		101B	900,000	90,000	810,000
	복도아트월1(침실2, 3)		101B	450,000	45,000	405,000
	폴리싱타일(거실+주방바닥)		101B	4,500,000	450,000	4,050,000
침실	침실2 불박이장		101B	900,000	90,000	810,000
	알파룸 (팬트리)	3연동 슬라이딩도어 (선택 시 주방고급키큰장 선택 불가)	101B	1,700,000	170,000	1,530,000
		시스템가구 (선택 시 주방고급키큰장 선택 불가)	101B	1,800,000	180,000	1,620,000
	드레스룸 (침실1(안방))	파우더장	101B	1,300,000	130,000	1,17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101B	1,200,000	120,000	1,080,000
		시스템가구	101B	3,300,000	330,000	2,970,000
주방	택 1 (중복 선택 불가)	주방고급장식장	101B	1,200,000	120,000	1,080,000
		주방팬트리	101B	1,200,000	120,000	1,080,000
	주방고급키큰장 (알파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또는 시스템 가구 선택 시 선택 불가)		101B	1,100,000	110,000	990,000
	아일랜드식탁(상판 엔지니어드스톤+하부장 포함)		101B	2,200,000	220,000	1,980,000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상판)		101B	3,600,000	360,000	3,240,000
	보조주방+선반		101B	500,000	50,000	450,000
	인덕션(하이브리드)		101B	450,000	45,000	405,000
	광파오븐		101B	450,000	45,000	405,000
	렌지후드(더블스퀘어)		101B	900,000	90,000	810,000
	냉장고장 (비김치냉장고, 비냉장고 선택 시 기본 제공)		101B	800,000	80,000	720,000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구조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여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우물천정(거실 및 주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 품목(시스템에어컨, 인덕션(하이브리드), 광파오븐, 렌지후드(더블스퀘어))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 (안)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 김치냉장고장 및 냉장고장 포함	선택 1 (중복 선택 불가)	비김치냉장고+시스템수납장		101A	3,000,000	300,000	2,700,000	
				101B	2,800,000	280,000	2,520,000	
		선택 1 (중복 선택 불가)	비흡바형냉장고	101A	6,600,000	660,000	5,940,000	
				101B	6,400,000	640,000	5,760,000	
		선택 1 (중복 선택 불가)	비디스펜서형냉장고	101A	8,600,000	860,000	7,740,000	
				101B	8,400,000	840,000	7,560,000	
	선택 2 (중복 선택 불가)	선택 1 (중복 선택 불가)	비김치냉장고+비흡바형냉장고 +시스템수납장		101A	8,600,000	860,000	7,740,000
					101B	8,400,000	840,000	7,560,000
			비김치냉장고+비디스펜서형냉장고 +시스템수납장		101A	10,600,000	1,060,000	9,540,000
					101B	10,400,000	1,040,000	9,360,000
			비오브제4도어 냉장고 +시스템수납장		101A	7,400,000	740,000	6,660,000
					101B	7,200,000	720,000	6,480,000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구조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어 추가선택품목 중 빌트인 가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에 따라 주택형별 현관신발장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의 깊이, 크기는 본 시공 시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보조싱크 옵션 미선택 시 하부에 별도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유상 옵션) 품목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3-586076	한국자산신탁(주)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112동 101호 계약자 → ‘41120101홍길동’ / 4112동 1001호 계약자 → ‘41121001홍길동’
- 납부주체가 당첨자(계약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재	<강마루(갈레밭이 포함)> 침실,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현관, <타일>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②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③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④ 일반가구	신발장, 불박이장, 기타수납장	-
⑤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콘센트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⑥ 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⑦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⑧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⑨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101A	101B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35,497,000	35,386,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IX

## 기타 계약자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른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부여할 예정임)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 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맘스테이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흡스쿨링, 여성공동작업장,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적용)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h3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3> <h4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h4>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화성 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 소 : (주)엘에이개발                  준공(예정)일 : 2023.12.3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신흥동2지구 A-80BL                  층 수 : 지하4층, 지상20층                  면적 : 84,111.8951㎡ (평가면적: 83,610.7039㎡)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2021-279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7.22.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계획(2020.04.30))             </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확립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7월 22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한국부동산원장</b></p> </div> <p style="font-size: small;">*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 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 소 : (주)엘에이개발 준공(예정)일 : 2023.12.3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신흥동2지구 A-80BL 층 수 : 지하4층, 지상20층 면적 : 84,111.8951㎡ (평가면적: 83,610.7039㎡)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21-279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7.22.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계획(2020.04.30))	<h3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h4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명 : 화성 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li> <li>설계자 : (주)엘에이개발</li> <li>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흥동2지구 A-80BL</li> <li>성능등급</li> </ol> <p><b>가. 소용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생활충족률 저하방지</td><td>★★★★</td></tr> <tr><td>2. 생활충족률 저하방지</td><td>★★</td></tr> <tr><td>3. 세대 간 정제역의 차용성능</td><td>★★★★</td></tr> <tr><td>4. 공통수납(도크) 및 도어 대안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광배수 소음</td><td>**</td></tr> </table> <p><b>나. 구조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우수유형</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우수유형</td><td>**</td></tr> </table> <p><b>다. 환경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후대리력 생애주기 가치</td><td>-</td></tr> <tr><td>2. 파도인 지역개발 계획</td><td>-</td></tr> <tr><td>3. 도시사 질서모양 최소화</td><td>-</td></tr> <tr><td>4. 일조면 간섭방지 계획 미달</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커먼스 에너지 관리 계획</td><td>★★★★</td></tr> <tr><td>9. 외관용 브로콜을 위한 녹지공간 사용 양적</td><td>-</td></tr> <tr><td>10. 환경성선언 제용(EFPO)의 사용</td><td>*</td></tr> <tr><td>11. 커먼스 계획의 사용</td><td>*</td></tr> <tr><td>12. 주차용 계획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저감 계획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계획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생활물양분관리 계획의 실적</td><td>★★★★</td></tr> <tr><td>16. 청정관리</td><td>-</td></tr> <tr><td>17. 직물 및 유충저감수 사용</td><td>-</td></tr> <tr><td>18. 절수형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상·사용양조너라인</td><td>**</td></tr> </table> <p><b>가. 소용 관련 등급(계속)</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7. 연평균 저기온 조성</td><td>-</td></tr> <tr><td>18. 가변성 저기온</td><td>**</td></tr> <tr><td>19. 생활면적률</td><td>**</td></tr> <tr><td>20. 비오류 조성</td><td>*</td></tr> <tr><td>21. 일내부기 오염물질 저감률 계층차 적용</td><td>★★*</td></tr> <tr><td>22. 자연 환기 성능 확보</td><td>-</td></tr> <tr><td>23. 난방계열 환기 성능 확보</td><td>★★*</td></tr> <tr><td>24. 자연소도요질경계 일치 수준</td><td>★★</td></tr> </table> <p><b>다. 생활 환경 등급</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기간 최·보편화 적용으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연결성</td><td>-</td></tr> <tr><td>3. 주민참여지원 및 주민역량으로 계획</td><td>**</td></tr> <tr><td>4. 생활면적률의 적정성</td><td>★★★★</td></tr> <tr><td>5. 건실면적률의 적정성</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방식 및 대응력 제고</td><td>★★★★</td></tr> <tr><td>7. 사용자 편의성 제고</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난방계획의 사회적 양자택일</td><td>**</td></tr> <tr><td>10. 공용부인의 사회적 양자택일</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생활 및 시설관리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외국 확보율</td><td>*</td></tr> <tr><td>13. 총대면적률 조성수준</td><td>**</td></tr> <tr><td>14. 평면인간 권택스</td><td>★★*</td></tr> </table> <p><b>가. 소용 관련 등급(계속)</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전기 및 정보전파</td><td>*</td></tr> <tr><td>2. 개인정보</td><td>**</td></tr> <tr><td>3. 대외연락</td><td>**</td></tr> <tr><td>4. 수평리넨라인</td><td>**</td></tr> <tr><td>5.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td><td>-</td></tr> <tr><td>6.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td><td>**</td></tr> <tr><td>7.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td><td>**</td></tr> <tr><td>8. 파노라마</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7월 22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한국부동산원장</b></p> </div>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충족률 저하방지	★★★★	2. 생활충족률 저하방지	★★	3. 세대 간 정제역의 차용성능	★★★★	4. 공통수납(도크) 및 도어 대안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광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우수유형	*	4. 수리용이성 우수유형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후대리력 생애주기 가치	-	2. 파도인 지역개발 계획	-	3. 도시사 질서모양 최소화	-	4. 일조면 간섭방지 계획 미달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커먼스 에너지 관리 계획	★★★★	9. 외관용 브로콜을 위한 녹지공간 사용 양적	-	10. 환경성선언 제용(EFPO)의 사용	*	11. 커먼스 계획의 사용	*	12. 주차용 계획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계획의 사용	*	14. 녹색건축계획의 적용 비율	*	15. 생활물양분관리 계획의 실적	★★★★	16. 청정관리	-	17. 직물 및 유충저감수 사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상·사용양조너라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연평균 저기온 조성	-	18. 가변성 저기온	**	19. 생활면적률	**	20. 비오류 조성	*	21. 일내부기 오염물질 저감률 계층차 적용	★★*	22. 자연 환기 성능 확보	-	23. 난방계열 환기 성능 확보	★★*	24. 자연소도요질경계 일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기간 최·보편화 적용으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연결성	-	3. 주민참여지원 및 주민역량으로 계획	**	4. 생활면적률의 적정성	★★★★	5. 건실면적률의 적정성	★★★★	6. 운영·유지관리 방식 및 대응력 제고	★★★★	7. 사용자 편의성 제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난방계획의 사회적 양자택일	**	10. 공용부인의 사회적 양자택일	**	11. 커뮤니티 생활 및 시설관리 조성수준	★★★★	12. 세대 내외국 확보율	*	13. 총대면적률 조성수준	**	14. 평면인간 권택스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전기 및 정보전파	*	2. 개인정보	**	3. 대외연락	**	4. 수평리넨라인	**	5.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	-	6.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	**	7.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	**	8. 파노라마	**	<h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h3> <h4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화성 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번호 : 2023123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신흥동2지구 A-80                  층 수 : 지하4층, 지상20층                  면적 : 84,111.8951㎡                  건축물의 주용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21-주-에-14-0271                  평가자 : 박정철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 1+등급             </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th> <th>에너지효율등급</th> <th>에너지소비효율 (kWh/m²·년)</th> <th>CO2 배출량 (kg/m²·년)</th> </tr> </thead> <tbody> <tr> <td>연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37.6</td> <td>50.9</td> <td>41.8</td> <td>9.1</td> </tr> <tr> <td>냉방</td> <td>30.7</td> <td>39.0</td> <td>29.5</td> <td>6.5</td> </tr> <tr> <td>조명</td> <td>7.2</td> <td>7.2</td> <td>19.9</td> <td>3.4</td> </tr> <tr> <td>합계</td> <td>75.5</td> <td>100.5</td> <td>100.5</td> <td>20.6</td> </tr> </tbody> </table> <p>이 건물은 연방양(17kWh/m²·년)을 초과하여 [V]등급(최저등급)으로 인증되었습니다.      * 예비 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1차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등급에 따라 인증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계획(2021년)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확립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7월 19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한국부동산원장</b></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 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번호 : 2023123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신흥동2지구 A-80 층 수 : 지하4층, 지상20층 면적 : 84,111.8951㎡ 건축물의 주용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주-에-14-0271 평가자 : 박정철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m²·년)	CO2 배출량 (kg/m²·년)	연방	0.0	0.0	0.0	0.0	난방	37.6	50.9	41.8	9.1	냉방	30.7	39.0	29.5	6.5	조명	7.2	7.2	19.9	3.4	합계	75.5	100.5	100.5	20.6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 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 소 : (주)엘에이개발 준공(예정)일 : 2023.12.3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신흥동2지구 A-80BL 층 수 : 지하4층, 지상20층 면적 : 84,111.8951㎡ (평가면적: 83,610.7039㎡)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21-279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7.22.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계획(2020.04.30))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충족률 저하방지	★★★★																																																																																																																																																																							
2. 생활충족률 저하방지	★★																																																																																																																																																																							
3. 세대 간 정제역의 차용성능	★★★★																																																																																																																																																																							
4. 공통수납(도크) 및 도어 대안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광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우수유형	*																																																																																																																																																																							
4. 수리용이성 우수유형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후대리력 생애주기 가치	-																																																																																																																																																																							
2. 파도인 지역개발 계획	-																																																																																																																																																																							
3. 도시사 질서모양 최소화	-																																																																																																																																																																							
4. 일조면 간섭방지 계획 미달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커먼스 에너지 관리 계획	★★★★																																																																																																																																																																							
9. 외관용 브로콜을 위한 녹지공간 사용 양적	-																																																																																																																																																																							
10. 환경성선언 제용(EFPO)의 사용	*																																																																																																																																																																							
11. 커먼스 계획의 사용	*																																																																																																																																																																							
12. 주차용 계획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계획의 사용	*																																																																																																																																																																							
14. 녹색건축계획의 적용 비율	*																																																																																																																																																																							
15. 생활물양분관리 계획의 실적	★★★★																																																																																																																																																																							
16. 청정관리	-																																																																																																																																																																							
17. 직물 및 유충저감수 사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상·사용양조너라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연평균 저기온 조성	-																																																																																																																																																																							
18. 가변성 저기온	**																																																																																																																																																																							
19. 생활면적률	**																																																																																																																																																																							
20. 비오류 조성	*																																																																																																																																																																							
21. 일내부기 오염물질 저감률 계층차 적용	★★*																																																																																																																																																																							
22. 자연 환기 성능 확보	-																																																																																																																																																																							
23. 난방계열 환기 성능 확보	★★*																																																																																																																																																																							
24. 자연소도요질경계 일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기간 최·보편화 적용으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연결성	-																																																																																																																																																																							
3. 주민참여지원 및 주민역량으로 계획	**																																																																																																																																																																							
4. 생활면적률의 적정성	★★★★																																																																																																																																																																							
5. 건실면적률의 적정성	★★★★																																																																																																																																																																							
6. 운영·유지관리 방식 및 대응력 제고	★★★★																																																																																																																																																																							
7. 사용자 편의성 제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난방계획의 사회적 양자택일	**																																																																																																																																																																							
10. 공용부인의 사회적 양자택일	**																																																																																																																																																																							
11. 커뮤니티 생활 및 시설관리 조성수준	★★★★																																																																																																																																																																							
12. 세대 내외국 확보율	*																																																																																																																																																																							
13. 총대면적률 조성수준	**																																																																																																																																																																							
14. 평면인간 권택스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전기 및 정보전파	*																																																																																																																																																																							
2. 개인정보	**																																																																																																																																																																							
3. 대외연락	**																																																																																																																																																																							
4. 수평리넨라인	**																																																																																																																																																																							
5.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	-																																																																																																																																																																							
6.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	**																																																																																																																																																																							
7. 정보 및 유충저감수 사용	**																																																																																																																																																																							
8. 파노라마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 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번호 : 2023123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신흥동2지구 A-80 층 수 : 지하4층, 지상20층 면적 : 84,111.8951㎡ 건축물의 주용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주-에-14-0271 평가자 : 박정철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m²·년)	CO2 배출량 (kg/m²·년)																																																																																																																																																																				
연방	0.0	0.0	0.0	0.0																																																																																																																																																																				
난방	37.6	50.9	41.8	9.1																																																																																																																																																																				
냉방	30.7	39.0	29.5	6.5																																																																																																																																																																				
조명	7.2	7.2	19.9	3.4																																																																																																																																																																				
합계	75.5	100.5	100.5	20.6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진설계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198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리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16200호	137,228,0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훔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 호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이수기술단(주)	㈜지티엘이엔지
금 액	1,034,393,800	433,062,361	316,7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 호	㈜화성동탄60피에프비이	㈜월메이드개발	제일건설(주)	바론피앤에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역삼동, 카이트타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역삼동, 카이트타워)
등록번호	110111-7983912	134811-0253188	135811-0093658	110111-6148070
연락처	031) 8015-8041	031) 8003-9316	031) 613-1157	031) 613-281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목	공종	금액(천원)	항목	공종	금액(천원)	항목	공종	금액(천원)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49,480,871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9,256,470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500,479			
	기간이자	1,844,668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488,895			
	필요적 경비	2,552,288			조적공사	365,496		가스설비공사	364,863			
	그 밖의 비용	5,162,316			미장공사	778,065		자동제어설비공사	488,895			
	계	59,040,142			단열공사	340,577		특수설비공사	301,638			
		방수, 방습공사			877,745	공조설비공사		197,649				
공사비	토목	토공사			2,885,783	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3,755,518			
		흙막이공사			-			가구공사	1,777,641	정보통신공사	2,679,439	
		비탈면보호공사			-			금속공사	448,564	소방설비공사	3,217,479	
		옹벽공사			-			지붕 및 홍통공사	343,344	승강기공사	681,945	
		석축공사			-			창호공사	1,622,581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2,690,199
		우, 오수공사			907,626			유리공사	1,030,034		이 윤	3,449,447
		공동구공사			-	타일공사	908,202	계	57,360,394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42,176	돌공사	811,290	간접비	부대비	설계비	817,080	
		도로포장공사			1,023,987	도장공사	423,644			감리비	1,723,75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09,452	도배공사	659,001	일반분양시설 경비	3,319,780					
		정화조시설공사	-	수장공사	1,268,162	분담금 및 부담금	3,306,287					
		조경공사	1,908,341	주방용구공사	1,434,297	보상비	-					
		부대시설공사	1,675,617	잡공사	490,097	기타 사업비성 경비	34,253,714					
		건축	건축	공통가설공사	1,030,034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832,040	계	43,420,617		
가시시설물공사	645,157			급탕설비공사	657,814		그 밖의 비용	11,713,946				
지정 및 기초공사	2,190,209			오배수설비공사	312,000		합계	171,535,100				
철골공사	-											

• 흙막이 공사비용은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 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가산비 공시

•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택지비 가산항목		금액(원)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1,844,668,010
	제세공과금	2,552,287,914
	암석지반 공사비	2,261,014,961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2,410,860,702
	지역난방 부담금	490,439,908
	<b>계(택지비 가산항목)</b>	<b>9,559,271,495</b>

건축비 가산항목			금액(원)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103,216,739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2,324,857,150
		초고속통신특등급	826,066,780
		에어컨냉매배관	504,340,690
		기계환기설비	1,480,174,630
	공동주택성능등급		1,462,322,85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1,711,877,444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293,806,520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건강친화형 주택	-
		전기자동차 충전기	37,620,000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 공사비	1,042,426,260
		법정초과 조경시설 설치비	555,616,069
	분양보증수수료		372,792,392
<b>계(건축비 가산항목)</b>			<b>11,715,117,524</b>

■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본 분양목적물은 분양사업자(위탁자)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거 시행 및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1.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대리사무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한국자산신탁(주)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분양사업자(위탁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금관리업무만을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분양사업자인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에게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분양사업자인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에게 있습니다.
3.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은 분양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만을 담당합니다.
4.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며,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제2항에 의거 분양수입금 총액을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양도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6. 한국자산신탁(주)은 분양계약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이 없습니다.
7. 분양사업자인 (주)화성동탄60피에프브이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8. 본 사업 관련 일체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일반사항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분양사무소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 공간은 화재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피난구 영역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적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생기는 피난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시공 중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세대 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장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 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기로 합니다.(단, 세대 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입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단, 세대 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세대 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한 결과로,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홈스쿨링,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작은도서관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및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급 및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인·허가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인 2020년 11월 기준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고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도로 신설 예정으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서측·북측으로 근린공원(근린공원16)이 접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신재리제2저수지(직선거리 약 0.6km)가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물류창고(직선거리 약 0.6km)가 위치하여, 시설물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직선거리 약 4.0km)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탄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골프장(직선거리 약 0.9km)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의 동탄JC 남동측에 폐기물처리시설(크린에너지센터\_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선거리 약 3.6km)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신주거문화타운)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당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 의 레벨차이로 단지 내·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통신 인입을 위한 맨홀 및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단지 내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차량 진출입,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의한 눈부심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신설 예정인 (가칭)동탄23초에,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가칭)동탄23초의 학교설립 시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는 개교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개교 전까지 (가칭)동탄22초(2023년 3월 개교 예정)에 임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당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통학거리증가를 보완하고자 입주자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통학안전대책(통학버스 제공 등)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임시배치 해지일까지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용시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하부 지하·지상층 및 주변에 헬륨 또는 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인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 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공간이므로 일부세대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 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세대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시공되며, 설치 규모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침해, 소음, 진동 및 빛 반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의자용 구조물, 피뢰침, 경관조명, TV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침해, 빛의 산란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4111동 3호와 4호의 경계 옥탑 지붕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기는 지하층 환풍구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벽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옥외 보안등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은 각 동 지하층에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지 내 택배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비상발전기 운전 시 운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은 특등급이 적용됩니다.
-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구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 일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팬룸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 동별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지붕 설치로 조망권 침해 및 시각적 간섭,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실내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112동 지하층에 실내어린이놀이터가, 4113동 지하층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맘스테이션은 주출입구 옆에 위치)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 등으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사생활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옥외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에 따라 보관대수는 상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접세대의 경우 사생활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규모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출입구에는 재연구획을 위해 방화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일부 출입통로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옹벽 등 단지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간섭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일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사전에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상의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후 인·허가 사항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담장(또는 조경석 등)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창,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조망 간섭,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견본주택의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필로티 부위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필로티 외주부 일부 벽체가 삭제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설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천 시 세대 외부 장식물 마감부위에 우수가 떨어짐으로써 일부 인접한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에는 조형물,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조망 및 시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구조물의 형태는 실시설계 시 구조검토에 따라 기둥의 형태, 사이즈, 개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조경 및 옥상배수 설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내 사생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에서 해당 옥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저층부 및 입면 마감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재활용품보관창고는 지하3층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동선 및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품보관창고,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의 조경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옥생비오름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해당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레벨차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휴게시설, 놀이시설, 수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총 561대(아파트 556대(세대당 1.8대), 근린생활시설 5대 / 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충전 주차면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지하층)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옥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전기차 콘센트)이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은 지하3층으로 진입가능하며,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8m,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 3층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지하3층 약 2.7m, 지하2층 약 2.3m로 부위별로 상이하며,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로 높이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택배차량 통행은 지하3층(차량통행로 높이 2.7m)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주차구역 및 일부 구간은 천정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하2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연결 가능한 층수는 동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주차장 사용성과 주차동선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주차장 연결층과 이동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2층 주차 후 각 동 출입구 이용 : 4111동, 4112동, 4113동(4113동은 외부 공간을 통해 주동 출입 가능,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출입은 불가능)
  - 지하3층 주차 후 각 동 출입구 이용 : 4111동, 4112동, 4113동, 4114동(4114동은 지하3층 주차장만 연결되어 있고, 지하2층 주차 후 단지 보행로를 통해 4114동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충분한 상담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따라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이용범위가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은 배치계획,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4114동은 지하3층 1개층만 연결되어 있어 다른 입주민들에 비해 주차공간이 다소 협소 하여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특성상 레벨로 인한 지하층 구분 방식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 제2조,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지하1층 : 4112동 101.00레벨의 실내어린이 놀이터, 지하2층 : 95.50레벨의 지하주차장, 지하3층 : 90.00레벨의 지하주차장, 지하4층 : 4114동 85.00레벨의 통행로(공용) 부분)

## ■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실외기실 창호는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간접등 박스의 깊이, 크기 및 위치는 본 시공 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동식 소화기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난방배관의 환수측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가스계량기와 메인 주방에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는 도시가스 공급측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의 급·배기는 세대별 외부와 직접 급·배기 방식이며, 급·배기를 위하여 비확장 시 발코니1 상부, 확장 시 발코니 상부에 설치되고, 세대 내부에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타입 욕실 내 바닥난방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등 일부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상부에는 물건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 시 필히 높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조명기구·배선기구·스마트스위치·세대 분전반·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건본 주택에서 확인)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통신단자함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식탁용 매입 또는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착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거실에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입면 장식물로 인해 실외기실 환기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 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현관창고 도어는 바깥 여닫이 형태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내부 공간 사용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마감 레벨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 소방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피난에 간섭되는 물건 등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보조싱크 옵션 미선택 시 하부에 별도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마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 비확장 시 환기장치 및 각종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 발코니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파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크기, 개폐 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기준층 거실 기준 2.4m이며, 실외기실, 발코니,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는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공 시 위치 및 형태, 색상,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101㎡B타입은, 건립세대인 101㎡A타입과 세대 마감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가구의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와 도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확장세대는 유·무상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된 주방상판, 마감판넬 등은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패턴, 색상, 나누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방가구 상부에 정경구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수납 선반의 경우, 사용 패턴 및 과도한 하중으로 인하여 처짐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품질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손잡이 등 가구의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출입문의 위치,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손잡이, 철물 등의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문을 및 천장몰딩,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 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판넬류 등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IoT 관련

- 사업주체와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환기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 I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허가 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공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101㎡A)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101㎡B)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세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월패드,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타입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형태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철거 또는 폐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또는 폐쇄 전 견본주택 내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

■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번지(우\_18445),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견본주택

■ 분양문의 : 1877-511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